

의안번호	2220978
의 퇴 인	조인철 의원
회 답 일	2026. 9. 4.
추계번호	26A4470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기금의 설치)	○ 정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함 ○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 구분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 (기금의 재원)	○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함 - 정부의 출연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신고포상금 환수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안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함	
4	안 제10조 (공익신고장려기금 운용 심의회)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둠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 (기금의 설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기금의 재원)	
3	안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4	안 제10조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	

2. 상세사유

- 제정안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금의 재원)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신고포상금 환수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 (기금의 용도) 신고포상금 지급, 공익신고활성화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 포상금 지급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보다 포상금 규모가 증가하여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공익신고장려기금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규모,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의 운용비용은 심의회의 구성과 회의 주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
 - 제정안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익신고 접수는 총 10,797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구조금은 4,300만원(15건), 보상금은 42억 1,900만원(199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공익신고 접수, 구조금 및 보상금 현황: 2022~2024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공익신고 접수 현황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 보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년	3,266	4	10	99	2,256
2023년	3,005	4	14	45	814
2024년	4,526	7	19	55	1,150
합 계	10,797	15	43	199	4,219

주: 1. 공익신고 구조금은 공익신고 때문에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했을 때 지급된 금액임

2.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가 발생했을 때 지급된 금액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rc.go.kr/>) 부패방지자료실(「공익신고 접수·처리 통계(2024.12.31.기준)」,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현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2025.8.6.~8.7. 계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